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학사운영지침

제정 2013. 3. 21.

개정 2021. 3. 17.

개정 2021. 12. 30.

폐지 2025. 12. 18.

제1조(목적)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과목 개설) 전공과목은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구조의학교실, 약물의학교실, 양생기능의학교실, 응용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임상의학 1교실, 임상의학 2교실, 임상의학 3교실, 임상의학 4교실, 한의과학과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각 교실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개설한다. 단, 필요할 경우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 ① 한의학 학술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장,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장 그리고 한의학 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장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장이 호선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
2. 전공의 신설 및 폐지 심의
3. 전공별 모집인원 배정 심의
4. 학기별 개설 교과목 결정
5. 교육과정 관련 제반 활동
6. 학위논문 관련 제반 활동
7. 한의학과 운영지침의 개정 심의

제4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② 출제, 감독 및 채점은 과목 담당교수가 한다.

③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평가는 본 운영지침의 제7조 준용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및 심사과정) ①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2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확정)하여야 한다. 이 때 학위과정 학생과 지도교수가 주저자이어야 하며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 이후 게재된 것만을 인정한다.
- ③ 석사 또는 박사과정학생은 학위청구 논문제출 6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2주 전까지 ‘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 위원회 위원장’의 주도 하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④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심사 시 대학원생은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입생 배정) 박사과정 학생 배정은 각 학년별로, 교수 1인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으로 2명까지 가능하다. 단, 정년퇴임까지의 재직잔여 기간이 2년 이하인 교수에게는 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학사 운영 규정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2013. 3.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한다.